

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(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 
관련)

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,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,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,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1. 도로분야

가.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2)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나.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: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다. 보조요원의 자격요건: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

2. 철도분야

가.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, 전기철도기술사, 철도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2) 토목기사, 철도보전기사, 철도신호기사,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·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나.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: 토목기사, 철도보전기사, 철도신호기사,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·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다. 보조요원의 자격요건: 토목기사, 철도보전기사, 철도신호기사,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·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

3. 항공분야

가.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

진 사람

2)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나.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: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다. 보조요원의 자격요건: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·감리·감독·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비고

1.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 등은 「건설기술기술헌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.
2.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중 교통기술사 및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기간은 도로·철도·공항 등 각 해당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을 말한다.